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720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이광희·박정현·정진욱

전용기 · 강준현 · 민형배

김승원 • 백승아 • 김용만

이재관 • 박희승 • 정준호

고민정 • 허성무 • 김 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추가적 국가 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후단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2014헌바180)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상 화해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생 략)	등과의 관계 등) ① (현행과 같
	승)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②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u><단서</u>	<u>다만,</u>
<u>신설></u>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